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2가단105976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204,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4.부터 2022.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920,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원고의 아들 E의 배우자(원고의 며느리)였고¹⁾, 피고 C은 E과 피고 D의 아들(원고의 손자)이다.

나. E은 2014. 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에서 혼자 생활하였고, 피고들은 2018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에서 거주하였다. E은 2019. 5. 24.경 원고의 요청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20. 6. 4. 피고들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7573호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1. 4. 27. ‘피고들이 늦어도 E이 이사한 2019. 5. 2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들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464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12. 2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3. 29.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늦어도 E이 이사한 2019. 5. 24.경부터 건물인도 강제집행일인 2022. 3.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원고의 허락과 동의 하에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에 거주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 C은 서울시 노원구 F에 음식점을 창업한 2020. 5. 10.부터 2021. 9. 15.까지는 주로 가게와 모텔에서 숙식을 해결하였고, 2021. 9. 16.부터 2022. 6. 19.까지는 단기임대한 아파트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위 기간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는 선행 소송의 당사자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분쟁의 실질도 동일하다. 더욱이 선행 소송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에 거주하게 된 경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을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미 심리되어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을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선행 소송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이 가지는 증명력을 번복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원고가 2022. 3. 29.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을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들이 위 강제집행일 무렵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을 점유·사용할 권한이 없이 이를 점유하면서 그 반환을 거절한 이상,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피고 C이 일시적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단점유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먼저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G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차임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에 대한 2019. 2. 1.부터 2020. 1. 31.까지 월 차임은 720,000원, 2020. 2. 1.부터 2021. 1. 31.까지 월 차임은 737,000원, 2021. 2. 1.부터 2022. 1. 31.까지 월 차임은 77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22. 1. 31. 이후부터의 차임도 그와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2019. 5. 24.부터 2022. 3. 29.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은 합계 25,204,257원(= 5,574,193원2) + 8,844,000원3) + 10,786,064원4))이 된다.

2) 다음으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보건대,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참조). 민법 제748조 제2항 및 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이 경우 ‘소를 제기한 때’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하며,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청구원인이 동일한 이상 소제기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1. 25.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소장 부분이 2020. 12. 3.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부당이득금액을 21,7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0. 12. 1.부터 피고들의 퇴거일까지 월 660,000원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2022. 8. 2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판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금액을 확장한 사실은 명백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20. 12. 3.부터 위와 같이 변경된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앞서 인정한 부당이득금 전부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앞서 인정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25,204,257원 전부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보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25,204,2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날인 2020. 12. 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주현

부동산 표시

서울 도봉구 H

[도로명주소] 서울 도봉구 I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4층 근린생활시설 주택

1층 107.06㎡

2층 107.06㎡

3층 107.06㎡

4층 68.47㎡

지하실 104.30㎡

(내역 : 지층 및 1층, 2층 근린생활시설, 3층, 4층 주택) 끝.

1) 2022. 5. 10. E과 피고 D에 대한 재판상 이혼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21드단7729호)

2) 2019. 5. 24.부터 2020. 1. 31.까지 : $720,000\text{원} \times 8\text{개월} + 720,000\text{원} \times 8/31 = 5,574,193\text{원}$ (원 미만 버림)

3) 2020. 2. 1.부터 2021. 1. 31.까지 : $737,000\text{원} \times 12\text{개월} = 8,844,000\text{원}$

4) 2021. 2. 1.부터 2022. 3. 29.까지 : $774,000\text{원} \times 13\text{개월} + 774,000\text{원} \times 29/31 = 10,786,064\text{원}$ (원 미만 버림)